환경표지 인증기준

EL256

제정 2008년 9월 12일
개정 2020년 4월 13일

EL256 : 2020
장식용 합성가죽

환경부

제 정 자: 환경부장관
제 정: 2008년 9월 12일 환경부고시 제2008-137호
최 종 개 정: 2020년 4월 13일 환경부고시 제2020-77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전화 1577-7360)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와 정의 2
4 환경 관련 기준 3
4.1 할로겐계 합성수지 3
4.2 수지 첨가제 4
4.3 염료 또는 안료 4
4.4 난연제 4
4.5 발포 재료의 발포제 4
4.6 유해물질 함량 4
4.7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5
5 품질 관련 기준 5
6 소비자 정보 5
7 검증방법 6
8 시험방법 6
9 인증사유 7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256. 장식용 합성가죽【EL256-2008/2/2012-36】은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56:2020**

장식용 합성가죽

Decorative Synthetic Leather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실내 주거공간의 벽·천장 및 가구류 마감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장식용 합성가죽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M201, 제품의 퍼플루오르옥탄설포네이트(PFOS) 및 퍼플루오르옥타노에이트(PFOA) 함량 측정 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 방법

KS K 0730, 폴리염화비닐 섬유 및 수지 내의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 함량 시험방법

KS K 0731, 섬유 제품의 용출성 중금속 함유량 측정 방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오염화석탄산(PCP)함유량 측정 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M ISO 17226-1,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 — 제1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

KS M ISO 17226-2,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 — 제2부: 비색 분석법을 이용한 방법

KS I ISO 16000-3, 실내 공기 — 제3부: 실내 공기와 시험 챔버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와 그 외의 카보닐 화합물 측정 — 액티브 채취 방법

KS I ISO 16000-6, 실내 공기 — 제6부: 흡착제 Tenax TA®를 이용한 액티브 시료채취, 열탈착 및 MS 또는 MS/FID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시험 챔버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KS I ISO 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 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 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M 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방법

KS M 3308, 폴리염화비닐(PVC)중의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의 정량 방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합성가죽

고분자수지를 섬유층에 침투시켜서 천연가죽과 유사하게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제품

3.2 오존층 파괴 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3.3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이산화탄소(CO_2)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

비고 이 기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14', the Fourth Assessment Report(AR5)에 따른 지속시간 100년의 GWP를 적용한다.

3.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공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 화합물

3.5 VOCs 방출량(VOCs emissions)

제품 사용 중 외부로 방출되는 VOCs의 양으로서, 규정된 조건에서 측정되는 시간당 값

비고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

3.6 프탈레이트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와 같은 합성수지에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액상제품에 용매로 사용하는 물질로서, 1,2-벤젠디카르복시산(1,2-benzenedicarboxylic acid)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화합물

4 환경 관련 기준

장식용 합성가죽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와 같다.

표 1 장식용 합성가죽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 할로겐계 합성수지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수지 첨가제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염료 또는 안료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난연제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발포 재료의 발포제	▪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유통·사용·소비	▪ 유해물질 함량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	-	-
재활용	-	-

4.1 할로겐계 합성수지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를 원료로 한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은 1.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b) 가소제로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benzyl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phthalate), 다이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phthalate)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으로 한다.

4.2 수지 첨가제

수지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 염료 또는 안료

염료 또는 안료로써 **부속서 A**에 따른 알러지성 분산염료, 발암성 염료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 니켈(Ni) 및 이들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한 염료 또는 안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4 난연제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한 때는 난연제로서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5 발포 재료의 발포제

제품의 구성 재료로서 발포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발포 재료에는 ODP가 0이며 GWP가 3 000 이하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4.6 유해물질 함량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유해물질 함량 기준

항목		기준
폼알데하이드 (mg/kg)		30 이하
염소화 페놀류 (mg/kg)	PCP	0.05 이하
	TeCP	0.05 이하
유해원소 (mg/kg)	납(Pb)	1.0 이하
	카드뮴(Cd)	0.1 이하
	총 크로뮴(Cr)	2.0 이하
	비소(As)	1.0 이하
	수은(Hg)	0.02 이하
유기주석화합물[a] (mg/kg)		1.0 이하
부속서 A에 따른 아릴아민[b] (mg/kg)		각각 30 이하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 dimethylformamide)[c] (mg/kg)		10 이하
과불화화합물	PFOS (μg/m^2)	1.0 이하
	PFOA (mg/kg)	0.1 이하
	8:2 FTOH (mg/kg)	0.1 이하

[a] 이 기준에서는 KS K 0737에서 정한 화합물만을 유기주석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b] 염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c] 폴리우레탄계 합성가죽에만 적용한다.

4.7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구분	VOCs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기준 (mg/m^2·h)	0.40 이하	0.080 이하	0.02 이하

5 품질 관련 기준

5.1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5.2 관련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a)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b)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c)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5.3 **5.1** 또는 **5.2**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

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6 소비자 정보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4.1	a)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b)	제출 서류 확인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2~4.5		제출 서류 확인
	4.6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4.7		**8.5**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 관련 기준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동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2 염화비닐단량체

KS K 0730 또는 KS M 3308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KS K 0730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GC-MS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8.3 프탈레이트

KS M 1991에 따라 시험한다.

8.4 유해물질 함량

8.4.1 폼알데하이드

KS M ISO 17226-1 또는 KS M ISO 17226-2에 따라 시험한다.

8.4.2 염소화 페놀류(PCP, TeCP)

KS K 0733에 따라 시험한다.

8.4.3 납(Pb), 카드뮴(Cd), 총크로뮴(Cr), 비소(As), 수은(Hg)

KS K 0731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커버의 유해원소는 KS K ISO 105-E04에서 정한 인공 땀액에 따른 시료 용액을 추출하여 시험한다.

8.4.4 유기주석화합물

KS K 0737에 따라 시험한다.

8.4.5 아릴아민

KS K 0147에 따라 시험한다.

8.4.6 DMF

KS M 0031에 따라 시험한다.

8.4.7 PFOS, PFOA

EM201에 따라 시험한다.

8.4.8 8:2 FTOH

KS M 0027에 따라 시험한다.

8.5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아래의 시험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a)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ES 02131.1'

b) KS I ISO 16000-3, KS I ISO 16000-6, KS I ISO 16000-9, KS I ISO 16000-11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a]	에너지 절약[b]	지구 환경오염 감소[c]	지역 환경오염 감소[d]	유해물질 감소[e]	생활 환경오염 감소[f]	소음·진동 감소[g]
해당 여부					●	●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부속서 A
(규정)

화학물질 목록

A.1 알러지성 분산염료(dyestuffs classified as allergenic)

CAS 등록번호	물질명
2475-45-8	C.I. Disperse Blue 1
2475-46-9	C.I. Disperse Blue 3
3179-90-6	C.I. Disperse Blue 7
3860-63-7	C.I. Disperse Blue 26
12222-75-2	C.I. Disperse Blue 35
12222-97-8	C.I. Disperse Blue 102
12223-01-7	C.I. Disperse Blue 106
61951-51-7	C.I. Disperse Blue 124
23355-64-8	C.I. Disperse Brown 1
2581-69-3	C.I. Disperse Orange 1
730-40-5	C.I. Disperse Orange 3
12223-33-5	C.I. Disperse Orange 37
13301-61-6	C.I. Disperse Orange 76
2872-52-8	C.I. Disperse Red 1
2872-48-2	C.I. Disperse Red 11
3179-89-3	C.I. Disperse Red 17
119-15-3	C.I. Disperse Yellow 1
2832-40-8	C.I. Disperse Yellow 3
6373-73-5	C.I. Disperse Yellow 9
12236-29-2	C.I. Disperse Yellow 39
54824-37-2	C.I. Disperse Yellow 49

A.2 발암성 염료(dyestuffs classified as carcinogenic)

CAS 등록번호	물질명
3761-53-3	C.I. Acid Red 26
569-61-9	C.I. Basic Red 9
632-99-5	C.I. Basic Violet 14
1937-37-7	C.I. Direct Black 38
2602-46-2	C.I. Direct Blue 6
573-58-0	C.I. Direct Red 28
2475-45-8	C.I. Disperse Blue
82-28-0	C.I. Disperse Orange 11
85136-74-9	C.I. Disperse Orange 149
6250-23-3	C.I. Disperse Yellow 23
2832-40-8	C.I. Disperse Yellow 3

A.3 아릴아민

CAS 등록번호	물질명
92-67-1	4-aminodiphenyl
92-87-5	benzidine
97-56-3	o-aminoazotoluene
99-55-8	2-amino-4-nitrotoluene
106-47-8	p-chroloaniline
615-05-4	2,4-diaminoanisole
101-77-9	4,4-diaminodiphenylmethane
91-94-1	3,3-dichlorobenzidine
119-90-4	3,3-dimethoxybenzidine
119-93-7	3,3-dimethylbenzidine
838-88-0	3,3-dimethyl-4,4'-diaminodiphenylmethane
120-71-8	p-cresidine
95-69-2	4-chloro-o-toluidine
91-59-8	2-naphthylamine
101-14-4	4,4-methylene-bis-(2-chloroanilene)
101-80-4	4,4-oxideaniline
139-65-1	4,4-thiodianiline
95-53-4	o-toluidine
95-80-7	2,4-toluylenediamine
137-17-7	2,4,5-trimethylaniline
90-04-0	o-anisidine
95-68-1	2,4-xylidine
87-62-7	2,6-xylidine
60-09-3	4-aminoazobenzene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